

2. WTO 출범에 따른 국내 經濟 關聯法 改正

- (焦點) WTO 協定 이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最少化하기 위한 「WTO 이행에 관한 特別法」 마련
- (主要 內容) 産業支援體制는 금년 3월말까지 全面 改編예정
- (展望) WTO 출범 관련 정비대상 經濟 關聯法 48개중 33개는 9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, 기타 15개는 금년부터 97년까지 改正 예정임

○ WTO 協定의 이행에 관한 特別法 制定

- WTO協定이 국내 경제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, 국회에서 작년 12월 同 法案이 통과, 95년 1월 3일부터 시행됨
- 미국의 UR이행 법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이 특별법은 14개조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WTO協定이 한국의 정당한 經濟的 權益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 (선언적 의미의 국내법 우선 조항)
 - 남북간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로 WTO協定의 適用을 받지 않음
(정부는 현재 WTO 내에서 南北 無關稅 교역을 인정받거나 북한과 무관세 동맹을 추진하는 案 등을 검토중. 남북 内部去來를 인정받을 時는,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주는 혜택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)
 - 국내상황 不利時 농수산물에 관한 特別緊急關稅를 부과할 수 있으며, 국·공립 기관 및 단체가 특정품목의 수입을 대행할 수 있게 하였음

○ 産業支援體制는 금년 3월말까지 全面 改編예정

- 금융세제 및 각종 産業支援을 위한 關聯法中 공업발전법,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등은 이미 改正되었으나 외자도입법, 조세감면법 등은 改正 예정임
-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금지보조금 내역을 WTO의 보조금·상계판세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規定에 따라, 정부는 관련 보조금 126개중 22개를 금지, 43개를 상계 가능, 61개를 허용보조금으로 分類하였음
 - 금지된 22개중 10개는 각종 수출보조금과 설비투자시의 세액 공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조세감면법이 개정되면 세금혜택이 불가능하게 되어, 생산비의 증가가 예상됨
 - 금지보조금은 先進國 3년, 開途國 8년(수출보조금은 5년)의 廢止 猶豫期間을 두고 있으나, 향후 소집될 보조금위원회에서 한국이 先進國으로 분류될 수

도 있으며, 이 경우는 97년 말까지 废止해야 함 (특히 미국이 보조금 분야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려고 함)

○ WTO 출범 關聯 整備對象 國內 法律은 48개며 33개는 94년 말 정기국회에서 이미 通過됨

- 94년 말 정기국회에 36개 法이 제출되어 33개 法이 통과되었고 3개의 法案(비료관리법, 낙농진흥법, 농지개량진흥법) 표결은 95년 임시국회로 연기되었으며, 나머지 12개 法은 95년부터 늦어도 97년까지는立法 완료 예정임
- WTO 출범 관련 法律 총 48개 중 28개는 WTO協定 遵守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20개는 WTO 體制에 대응한 競爭力 強化를 위한 것임
-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準都市 지역안의 草地를 공장설립용 용지로 轉用時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였음.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대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, 관세법의 개정은 농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제시하였음

< WTO 관련 改正 對象 主要 法律 内역 >

년도	WTO協定 遵守를 위한 개정	競爭力 強化를 위한 개정	계
94 년도 改正 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, 축산법, 산림법, 양곡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(농업분야: 8개) ○ 관세법,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, 도소매업 진흥법, 공업발전법, 대외무역법, 건축사법,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(제조업 및 서비스: 9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, 농업기계화 촉진법,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, 농어촌 정비법(제정), 농지법(제정), 농업협동조합법 등 (농업분야: 11개) ○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, 중소기업 기본법,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(제조업 및 서비스: 5개) 	33
95년 이후 改正 대상	○ 조세감면규제법, 외자도입법, 세무사법, 예산회계법, 특허법, 상표법, 저작권법, 기술개발 촉진법,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	○ 비료관리법, 낙농진흥법, 농지개량조합법, 축산물 위생처리법 (농업분야: 4개)	15
합계	소계: 17	소계: 16	48

(장 민 수)